

『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』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

의 안 번 호	347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 · 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부터 『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』에 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신청이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관계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

3. 주요내용

- 시유재산 현황
 - 위 치 : 속초시 도문동 1664-3번지
 - 토 지 : 454m²(수도용지)
 - 건 물 : 117.6m²(시멘트벽돌조 1층 58.8m², 2층 58.8m²)
 - 재산종류 : 행정재산
- 허가신청 현황
 - 신 청 인 :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 · 한국해양연구원장
 - 신청면적 : 토지(454m²) 및 건물(117.6m²)
 - 사용기간 : 허가일부터 2011. 2월

※ 연간사용료(면제액) : 9,541,450원

(재산평가액 190,828,911원 × 사용요율 50/1000)

4. 참고사항

1. 위치도 및 건물전경사진(별첨)
2. 관련법령 발췌(별첨)
3. (구)도문제2취수장 사용료 산출근거(별첨)

※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: 2008. 9. 29

2. 관련법령 발췌

[사용 · 수익허가 관련]

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(이하 "정부출연연구기관등" 이라 한다)에 사용허가하는 경우

[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관련]

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

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(사용료 면제)

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

3. (구)도문제2취수장 사용료 산출근거

● 총 사용료 : 9,541,450원

– 190,828,911원(재산평가액) × 50/1000(사용요율) × 1년

▶ 재산평가액(토지+건물) : 190,828,911원

(단위 : 원)

구 분	재산의 표시			평정단가	평정금액	비고
	지번	지목 및 구조	면적(m ²)			
계					190,828,911	
토 지	속초시 도문동 1664-3	수도용지	454	55,000	24,970,000	‘08년 공시 지가
건 물		시멘트벽돌조	117.6	-	165,858,911	‘05년 자산 평가

※ 연간 사용료 산출

⇒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(대부료의 요율)

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

– 1,000분의 50 적용시 : 9,541,450원(190,828,911원 × 5%)

